 보도참고자료

**보도시점 2023. 3. 29.(수) 12:00 배포 2023. 3. 29.(수) 10:00**

**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**

- 2023년 4월 3일(월)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 가능 -

* **(제도 개요) 국세청**(청장 김창기)은 임차인 **전세피해 방지**의 일환으로 **4월 3일(월)부터** 임대인에 대한 **미납국세 등의 열람**(이하, 미납 국세열람)제도\*를 확대 ‧ 개선하여 운영합니다.

# 붙임2 미납국세열람 신청서

*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[별지 제95호서식]

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[ ]주택임차

[ ]상가임차

(앞쪽)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 즉시 |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임차인 (임차하여 사용하 려는 자 포함) | 성명(상호) |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|
| 주소(사업장) | 전화번호 |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임대인 | 성명(상호) |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|
| 주소(사업장) | 전화번호 |

임차 건물 소재지(건물의 종류ㆍ명칭 및 동ㆍ열ㆍ층ㆍ호 등 구체적으로 기재)

|  |  |
| --- | --- |
| [ ]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한 경우 | 「국세징수법」 제109조제1항에 따라 위 임차인(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포함)에게 본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동의합니다.년 월 일임대인 (서명 또는 인) |
| [ ]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하지 않은 경우 | ※ 「국세징수법」 제109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를 말합니다. |

「국세징수법」 제109조에 따라 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합니다.

**세 무 서 장** 귀하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첨부서류 | 1.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) 1부
2.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임대차계약서 사본) 1부

(「국세징수법」 제10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 | 수수료 없음 |

유의사항

1. 「국세징수법」 제109조에 따른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.
2.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(종합소득세의 경우 60일)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이 가능하며, 납부하지 않은 각 국세별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소액국세의 경우 열람 시점과 미납부 세액 검증 및 전산 입력 시점 간 시차로 인하여 조회 내역서에 일부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